2022. 12. 6.(화) 10:00

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

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도 시 환 경 위 원 회

(수석전문위원 신 성 해)

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이택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1. 제안이유

❍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 시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❍ 상위법 일부개정('21. 7. 20. / '22. 2. 3.)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(안 제2조)

나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의 조문개정에 따라 도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함(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)

다. 빈집활용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 중 "위원장을 보좌"하는 업무를 삭제함(안 제24조제2항)

라.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서류를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하는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34조)

3. 검토의견

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○ 「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'법'이라 함) 개정('21. 7. 20. / '22. 2. 3.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

나. 주요 내용별 검토

○ 안 제2조(정의)는 동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를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의 용어 정의를 참고할 수 있도록 명기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과 논란을 방지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

○ 안 제34조(관련자료의 인계)에서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해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은 법 제54조제7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
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생성된 관계 서류를 시장·군수가 일괄적으로 인계받음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

또한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해야 하는 관계 서류 목록 및 제출시기는 일반재정비사업에 적용되는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58조(관련자료의 인계)와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❍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해야 하는 서류 목록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